[목 차]

- 무배당 하나 즉시연금보험 약관 .....
-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

무배당

하나 즉시연금보험 약관

무배당 하나 즉시연금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8조 【계약의 소멸】
제9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6조 【해약환급금】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제18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 【주소변경 통지】
제23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4조 【대표자의 지정】
제2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2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0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제32조【관할법원】
제33조【약관의 해석】
제3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준거법】
제3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하나 즉시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table>
<tr><th colspan="2">연금지급형태</th><th>연금지급주기</th></tr>
<tr><td colspan="2">종신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td><td rowspan="3">연단위, 월단위</td></tr>
<tr><td rowspan="2">상속연금형</td><td>종신상속연금형</td></tr>
<tr><td>정기상속연금형(10년, 15년, 20년 지급)</td></tr>
</table>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3.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4. 신용생명보험계약의 경우
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생존연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3. 정기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8조(계약의 소멸),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보증지급분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일시금 신청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초과시에는 연복리 2.0% 최저보증합니다)은 제1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6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0조 【보험계약대출】
① 상속연금형(종신상속연금형, 정기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종신연금형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제 11 조 제 1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 년 또는 20 년 보증지급)
사망보험금 (제 11 조 제 2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지급

– 상속연금형

(1) 종신상속연금형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제 11 조 제 1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사망보험금 (제 11 조 제 2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2) 정기상속연금형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제 11 조 제 1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 년, 15 년, 20 년)동안 지급
사망보험금 (제 11 조 제 2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만기보험금 (제 11 조 제 3 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책임준비금(일시납보험료 해당액) 지급

(주) 1. 생존연금 지급 개시 및 지급주기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연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년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지급
월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매월지급

2.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해당 연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일시금 수령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 기간(10년, 20년)안의 생존연금은 일시금 수령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5%, 10년 초과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질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 5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7-4 호, 2008.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6 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 28 조 제 2 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적 립 기 간</th><th>적 립 이 율</th></tr>
<tr><td rowspan="5">생존연금
(제 11 조 제 1 호)</td><td>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td><td>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td></tr>
<tr><td colspan="2">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
대출이율</td></tr>
<tr><td>사망보험금
(제11조 제2호)</td><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
대출이율</td></tr>
<tr><td rowspan="4">만기보험금
(제11조 제3호)</td><td>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청구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td></tr>
<tr><td colspan="2">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rowspan="3">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td><td colspan="2">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td></tr>
<tr><td colspan="2">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able>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조【특약의 내용】
제 3 조【특약의 부가조건】
제 4 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5 조【특약내용의 변경】
제 6 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특별조건부특약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② 특약을 2인(3인, 多人)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③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 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 년이상 2 년미만			60%	50%	40%	30%
2 년이상 3 년미만				75%	60%	45%
3 년이상 4 년미만					80%	60%
4 년이상 5 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 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 년증이라 칭하고 n 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倂用)할수 있습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 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